

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2017. 9. 19] 규칙 제1388호

일부개정 2018. 12. 18 규칙 제143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)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1과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·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기간, 사유 등을 홈페이지,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군수 또는 수탁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시설 사용 허가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(별지 제4호서식)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(변경)허가대장(별지 제5호서식)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(별지 제6호서식)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수강신청접수대장(별지 제7호서식)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 등 감면·반환)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(별지 제8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

신청서(별지 제9호서식)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제한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2.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4.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
5.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)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관리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허가 취소통지서(별지 제10호서식)를 시설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부운영지침)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18 규칙 제143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시설별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(제2조 관련)

시설명	부속시설명	운영시간			정기휴관일	비고
		구분	오전	오후		
청소년수련관	실내수영장	월~금요일 토요일	06:00~20:00 09:00~12:00	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		
	다목적체육관					
	체력단련실					
	평생교육실					
	실내골프장					
	청소년특성화실					
	청소년자치활동실					
	청소년동아리실					
	공연장	월~금요일	09:00~20:00			
		토요일	09:00~12:00			
	피아노교실	월~금요일	13:00~18:00			
	북카페	월~금요일	09:00~18:00			
	인터넷공부방	월~금요일	14:00~19:00			
		방학기간	11:00~18:00			
	청소년풋살장	연중개방	08:00~20:00			
청소년문화의 집		화~토요일	09:00~21:00	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	성인(화~금요일) 09:00~14:00 * 방학기간 중 이용제한	
		일요일	09:00~18:00			
청소년상담센터		월~금	09:00~18:00			

※ 시설이용시간은 부속시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【별표 2】 제6조 관련

허 가 조 건

1.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.
2.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의 파손 및 훼손 시 행사 참가자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24시간 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,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3.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연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4. 사용자는 관람객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와 행사장 안에 반입 금지 물품(음식물, 꽃 등)을 통제하여야 하며,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
5.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폭죽, 불꽃, 성냥불, 촛불 등의 화기물품은 절대 금지하며, 이의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소방차·소방관입회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
6. 공연장 안에 물품·장비 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, 필요 시 방염처리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, 대관사용자가 반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.

7. 시설의 전 구역(부지 포함)은 ‘그린 존’으로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, 탄산음료를 제공할 수 없고, 음식물 등을 허가 없이 시설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관람객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8. 홍보물(프랭카드, 포스터 등)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(현관 등)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,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.
9.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판촉·판매행위(식품류, 집기류 등)나 이동 뷔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,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10.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선 이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,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. 또한,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주차유도요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11. 공연 또는 행사 시 필요한 별도의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전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.
12.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종료 후 행사장(객석포함)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(쓰레기봉투 별도구입 사용)
13. 시설 안에서는 상업목적의 행위 또는 종교적인 집회를 금지하며, 위반 시에는 공연(행사)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14.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시설 내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진촬영, 녹화, 리허설을 할 수 없습니다.

(뒷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()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() 시설 사용 승인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
 - 개 인: 주소,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
 - 단체/법인: 대표자 성명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**5년**
4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연천군수 귀하

세부계획서(공연 · 행사 · 전시)

○ 공연(행사, 전시)의 취지 및 개요

○ 프로그램 세부내용(지면 부족 시 별지 첨부)

【별지 제2호서식】 제3조 관련

시설 사용 허가서			허가 번호	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사용목적				
공연, 행사, 전시명				
대관하고자 하는 시설	공연장(), 다목적체육관(), 평생교육실(), 야외공연장(), 그 밖의 시설() ※ 해당시설에 ○표			
사용기간	20 년 월 일 시부터 ~ 20 년 월 일 시까지 ※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			
이용인원	출연예정 ()명, 참석예정 ()명			
입 장 료	유료(), 무료() ※해당란에 ○ 표			
허가조건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 이 허가합니다.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				

[별지 제3호서식] 제3조 관련

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			허가 번호	
신청인	주 소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허 가 사 항		허 가 내 용		변경신청내용
이 용 인 원				
대관하고자 하는 시설				
행 사 명				
사 용 기 간				
입 장 료				
허 가 조 건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)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 : 사용변경 계획서 1부				

[별지 제4호서식] 제3조 관련

시설 사용변경 허가서			허가 번호	
신청인	주 소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허 가 사 항		당 초 허 가 내 용		변경허가 내용
이 용 인 원				
대관하고자 하는 시설				
행 사 명				
사 용 기 간				
입 장 료				
허 가 조 건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연 천 군 수				

[별지 제5호서식] 제3조 관련

시 설 사 용 (변 경) 허 가 대 장

일련 번호	허가 번호	사용 기간	신청자 성명 (단체명)	사용 인원	사용 시설	사용 목적	사용 금액	사용료 납부 여부	결재		
									직원	계장	관장

[별지 제6호서식] 제3조 관련 <개정 2018. 12. 18>

(앞면)

수 강 신 청 서				접수번호	
신청과목		수강료	원	수강기간	
이 름		성 별		생년월일	
주 소				전화번호	
학 교	학교 학년				
수강동기	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연 천 군 수 귀하					

(뒷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()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: () 수강신청 승인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
 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**5년**
4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 ☐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연천군수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 제3조 관련

수강신청접수대장

접수 번호	접 수 연월일	신 청 자				수강기간	신청과목	비고
		주소 (학교명)	성명	생년월일	성별			

[별지 제8호서식] 제4조 관련

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				접수 번호	
신 청 인	주 소	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사용인원	계	남	여	사용 기간	년 월 일
					년 월 일
사용목적					
감면사유	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: (서명 또는 날인) 연천군수 귀하 붙임 : 감면관련 증빙서류					

[별지 제9호서식] 제4조 관련

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			접수 번호	
신청인	주 소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시 설 명				
사용기간			사용료	
반 환 사 유				
반 환 금 액		원(₩)		
금융기관명			예금주명	
계 좌 번 호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 또는 서명) 연천군수 귀하				

[별지 제10호서식] 제6조 관련

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			허가 번호	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 (FAX)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사 용 시 설				
사용(변경)기간	부터			
	까지			
사용목적				
취소사유				
「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. 년 월 일 연 천 군 수				